



국립강릉원주대학교 - 해양경찰청 업무협약서



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해양경찰청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
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우호증진을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할
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의 목적은 양 기관 간 상호 교류 증진 및 협력을
통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한 해양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.

제2조(기본 원칙) 양 기관은 상대방의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 호혜적인
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제3조(협력 분야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.

1. 해양·해양경찰 관련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·교류
2. 해양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류 및 장학사업 증진
3. 양 기관 보유 시설 등 물적 자원의 상호 이용
4. 양 기관의 학생·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교류
5.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협약의 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 상 차이가
있는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5조(효력 등)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자동 종료된다.

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,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합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개정)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비용부담) 본 협약에 따른 비용부담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5일



국립강릉원주대학교
총장 반 선 섭



해 양 경 찰 청
청장 김 종 욱

반 선 섭

김 종 욱